•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구정방향■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1324호 2022. 8. 8.(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17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19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53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 30

회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17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 위탁기간 관련 조문 개정 필요

※ 개정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계약기간 기존 3년이내 ⇒ 변경 5년이내

○ 청소년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 대관 절차 및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12조)

- 시설 사용 절차 및 사용료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기간 관련 조문 개정(안 제13조 제2항)

- 청소년시설 3년 이내 ⇒청소년시설 3년이내(청소년상담복지센터 5년 이내)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여성아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032-749-6752), 팩스(032-749-673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설을”을 “청소년시설을”로, “시설 이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종전 제16조는 삭제한다.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일주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 허가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 ·변경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으로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2. 구의 사정으로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3.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

4.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사용예정일 3일 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5. 사용예정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정치·종교적인 목적의 사용이라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종전 제6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1”로,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시설”로, “위탁(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를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운영”을 “위탁운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종전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를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로, “청소년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제1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종전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탁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구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2. 청소년분야 전문가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안건 심사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종전 제12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시설”을 각각 “청소년시설”로 한다.

제22조(종전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의 적용례) 제13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청소년시설 현황(제4조 관련)

연 번	시 설 명 칭	주 소	비 고
1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연수구 앵고개로 132	
2	연수 청소년문화의집	연수구 비류대로 299	
3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연수구 앵고개로 235	
4	연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수구 원인재로 283	
5	연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수구 비류대로 429	

[별표 2]

청소년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단위 : 원)

구 분	시 설	청소년	일반	비 고
춘절기(4월~6월), 추절기(9월~10월)	강 당	무료	20,000(2시간)	
	강의실		10,000(2시간)	
	풋살경기장		10,000(2시간)	
하절기(7월~8월) 동절기(1월~3월,11월~12월)	강 당		40,000(2시간)	냉난방비 포함
	강의실		20,000(2시간)	
	풋살경기장		10,000(2시간)	

2.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단위 : 원)

구 분	시 설	청소년	일반	비 고
춘절기(4월~6월), 추절기(9월~10월)	다목적교육실	무료	20,000(2시간)	
	프로그램실		10,000(2시간)	
하절기(7월~8월) 동절기(1월~3월,11월~12월)	다목적교육실		40,000(2시간)	냉난방비 포함
	프로그램실		10,000(2시간)	

※ 청소년은 무료로 대관할 수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료 부과

※ 기준시간(2시간) 초과 시 시간 단위를 환산하여 추가 계산함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시설 사용 신청서

<table>
<tr><td colspan="2">접수번호</td><td colspan="3"></td><td>E - mail</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사
용
자</td><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단 체 명</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사 용 시 설</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사 용 내 용</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 rowspan="2">사 용 기 간</td><td>준비시간/리허설</td><td colspan="5">20 . . . : 부터 ~ 20 . . . : 까지</td></tr>
<tr><td>본 행 사</td><td colspan="5">20 . . . : 부터 ~ 20 . . . : 까지</td></tr>
<tr><td colspan="2" rowspan="2">사 용 시 설
및 설 비</td><td>기본시설</td><td colspan="5"></td></tr>
<tr><td>부대설비</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사 용 인 원</td><td colspan="6">명</td></tr>
<tr><td colspan="2">사용 시
주의사항</td><td colspan="6">○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u>사용기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수리) 한다.</u>
○ 시설물 사용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행사 및 영리적 행사 등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입장료, 관람료, 후원금 등)을 위한 행사는 하지 않는다.
○ 다음 사용자에 대한 불편 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며, <u>음식물 등은 반입하지 않도록 한다.</u>
○ 제반시설에 대한 운영 및 사용은 관계자(직원)의 의견에 따른다.
○ <u>화환 등 행사에 관련된 물품은 반드시 회수한다.</u>
○ <u>시설물 사용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행사시간을 반드시 준수한다.</u>
※ 리허설/본행사 시간 미준수시 강제종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행사에 따른 주최 및 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요원을 선임하여 제반사항을 감독 및 책임을 진다.
○ 지정된 장소 외에는 선전물을 부착하지 않는다.</td></tr>
<tr><td colspan="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8">「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시설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20 . . . : 부터 ~ 20 . . . : 까지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사 용 료	일금 원 (₩)			
허 가 조 건	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을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다. 3. 사용 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대시설(전시물 포함)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사용 종료 후 원상 복구해야 하며, 지체 없이 설치한 부대시설을 인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허 가 일	20 . . .	허가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 명			
	생년월일			
사용 목적				
감면 종료		☐ 전액감면 ☐ 50% 감면		
감면 사유		☐ 구 주관 ☐ 법률·조례 ☐ 국가·자치단체 ☐ 기타		
증빙자료 내역 (별도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상담시설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이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 ----------, ---------- ---------- ---------- ---------- ----------, ---------- ----------, ---------- ---------- --.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조례 ---------- ----------.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 4 조 (설 치) ---------- ---------- -- 별표 1과 ----.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의 활동, 교육, 문화,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 ----, ----, ---------- 청소년시설을 ----------, 이용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일주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 허가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사용 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 ·변경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 규정에 의거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으로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2. 구의 사정으로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3.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전까지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 4.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3일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5. 사용예정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
<신 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정치·종교적인 목적의 사용이라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별표의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 별표1의 청소년시설---------- 위탁----------.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	③ ----------위탁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 ----------

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위탁운영단체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단체 선정) ① -- -----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단체----------.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 제7조제2항 각 호와 같음)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부서국장이 된다.	제1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1. 제14조에 따른 위탁운영단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청소년 전문가, 연수구의회 구의원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탁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구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2. 청소년분야 전문가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안건 심사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2조(위탁운영단체의 의무) ① (생 략) ② 위탁운영단체는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⑤ 위탁운영단체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탁운영단체는 위탁받은 시	제19조(위탁운영단체의 의무) ① (현행 제12조제1항과 같음) ② ---------- 제18조----------. ③ ~ ④ (현행 제1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 청소년시설, ----------. ⑥ ---------- 청

설의 개·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위탁운영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소년시설---------- ---------- ---------- ---------- ---------- -------.
⑦ (생 략)	⑦ (현행 제12조제7항과 같음)
제13조 ~ 제14조 (생 략)	제20조 ~ 제21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생략)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① (현행 제15조제1항과 같음)
1. 위탁운영단체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 제17조제2항 ---------- ----------
2. ~ 3. (생 략)	2. ~ 3. (현행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 ----------
② (생 략)	② (현행 제15조제2항과 같음)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위탁운영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30일 전 ---------- ---------- ----------.
④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제8조를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하	<삭 제>

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19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모호한 규정 및 운영상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고,

○ 주민자치교육을 사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나아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를 보다 폭넓게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개추첨 시 문제점 개선 (제8조제1항)

○ 주민자치위원의 사전 의무교육 등 폐지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제2호, 제1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5.(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마을자치과(☎749-7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전화 749-7211, FAX 749-7219

○ 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의 모집 정원 이내일 경우 추첨 없이 선정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정원의 80퍼센트 이하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주민자치회 정원의 20퍼센트 이하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제11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분과위원회별”을 “분과위원회별 주민자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가 전체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전체위원의 80퍼센트 이내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20 퍼센트 이내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의 모집 정원 이내일 경우 추첨 없이 선정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정원의 80퍼센트 이하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주민자치회 정원의 20퍼센트 이하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⑤ (생 략)	③·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비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되어 충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2. ---------- ------ 제4항---------.
⑦ ~ ⑨ (생 략)	⑥ ~ ⑧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 보수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생 략) 2. 분과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제18조(회의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분과위원회별 주민자치회 ----------. ② ~ ⑦ (현행과 같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08.0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09.07.09	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청학동 567-2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94번길 6-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